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덕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064

발의연월일: 2025. 2. 11.

발 의 자: 박덕흠 · 엄태영 · 서천호

조지연 • 고동진 • 김예지

김정재・이종배・강승규

구자근 · 김장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「저작권법」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(이하 "조치의무사업자"라 함)에게 자신이 운영·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(이하 "불법촬영물등"이라 함)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·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동영상을 제공하는 조치의무사 업자의 경우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여부를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(이 하 "모니터링"이라 함)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이 제공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실시간동영상을 제공하는 조치의무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불법촬영물등 모니터링체계를 구축· 운영하도록 하고,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의5제7항 및 제22조의6제1항 각 호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5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조치의무사업자 중 실시간동영상(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에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듣거나 볼 수 있는 영상을 말한다)을 제공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여부를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(이하 "모니터링"이라 한다)하기 위한 불법촬영물등 모니터링체계를 구축・운영하여야 한다.

제22조의6제1항 중 "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·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·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
- 2. 제22조의5제7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모니터링체계를 구축·운영 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2조의5(부가통신사업자의 불 제22조의5(부가통신사업자의 불 법촬영물 등 유통방지) ① ~ 법촬영물 등 유통방지) ① ~ ⑥ (생략) (b)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⑦ 조치의무사업자 중 실시간 동영상(컴퓨터 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등에 저장되지 아니 하고 실시간으로 듣거나 볼 수 있는 영상을 말한다)을 제공하 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 물등의 유통 여부를 주기적 또 는 수시로 점검(이하 "모니터 링"이라 한다)하기 위한 불법 촬영물등 모니터링체계를 구축 • 운영하여야 한다. 제22조의6(유통방지 조치 등 미 제22조의6(유통방지 조치 등 미 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) 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)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2조의 (1) -----다음 각 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---삭제·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 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

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. <<u>신</u> 설>

<신 설>

② ~ ⑤ (생 략)

1.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

활영물등의 삭제·접속차단
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
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
2. 제22조의5제7항에 따른 불법

활영물등 모니터링체계를 구
축·운영하지 아니한 자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